##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86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김민기·강병원·홍성국

양경숙 · 정춘숙 · 김정호

이재정 • 박 정 • 이워택

박성준 · 김남국 · 이수진

윤미향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아동·청소년이나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판결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청소년과 대면하기 쉬운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 봄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들에 대한 취업 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아이돌봄서 비스제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되도록 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7호 및 제23호). 법률 제 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7호 중 "어린이집"을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에의 취업제한 등) 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성범죄"	
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	
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	
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	
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	
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하"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	
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	
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	
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	
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	
(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 ~ 6의2. (생략)
- 7.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 호의 <u>어린이집</u>

8. ~ 22. (생 략) <u><신 설></u>

② ~ ⑧ (생 략)

1. ~ 6의2. (현행과 같음)
7
<u>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u>
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8. ~ 22. (현행과 같음)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11
조에 따른 서비스제공기관
② ~ ⑧ (현행과 같음)